###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304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4일
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"기금전출금"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"전입금"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. 주요 골자

○ "기금전출금"을 "전입금"으로 함(안 제4조제1호).

#### 3. 참고사항: 생 략

#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호 중 "기금전출금"을 "전입금"으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재보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 일반회계 출연급 2. ~ 7. (생 략)  제7조(기금의 운용-관리) ① ~ ② (생 략)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살국 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담당사무관 으로 한다. 다만.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안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병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 특별시 재무회계관계 공무원 을 가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① 「지방재정법」의회재관계 공무원 을 가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기금운 원기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전하는 관사 회계관계 공무원 을 가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판한 규정은 기금을 답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의를 준용한다. ⑤ ~ ⑥ (생 략)  재선조(기금의 조성)  지기조(기금의 조성)  제기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제기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  제기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  지기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	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① ~ ② (생 략)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국 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 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 공무원의 <u>사무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가금사업비 집행절치의 투명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<u>「서울</u> 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 을 가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④ 「지방재정법」의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을 당원에게 만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	각 호의 재원으로 <i>조</i> 성한다. 1. 시 일반회계 <u><b>출연금</b></u>	 1 <u>기금전출금</u>	
	① ~ ② (생 략)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실·국· 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기금시업비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정하는관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④ 「지방재정법」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이를 준용한다.	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	

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의 "출연금"을 "전입금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의 단서 중 "사무중"을 "사무 중"으로 하고, "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"을 "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"으로 하며, "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"를 "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"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「지방재정법」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"을 "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	제4조(기금의 조성)
재원으로 조성한다.	
1. 시 일반회계 <u><b>출연금</b></u>	l <u>전입금</u>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	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·국·본부장으로	③
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	
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	
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중</u> 지출의 원인	<u>사무 중</u>
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	
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	
을 강화하기 위하여 <b>「서울특별시 재무회</b>	
<u>계규칙</u> 」에서 정하는 관서 <b>회계관계 공무</b>	계 규칙」 회계관계공무원
<u>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</u> 하여 처리하	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
게 하여야 한다.	
④ 「지방재정법」의회계관계공무원의	④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
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	의 책임 중 재무관
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	
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	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